

#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0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0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여성회관이 소재한 토지에 대해 신 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규정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가. 여성회관의 위치에 신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파주시 금촌동 952-4번지 일원으로 함. (안제3조)

나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.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함. (안제7조)

다.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요보호대상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기술교육에 한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7조)

#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치)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동 952-4번지 일원에 둔다.

제7조 본문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기술교육에 한한다.

3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 · 과 · 소 |        | 사회복지과 ☎940-4448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입안자          | 사회복지과장 | 이 평 자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여성회관장  | 김 영 애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담 당 자  | 김 희 정           |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위치) <u>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74블럭 3,4롯트에 둔다.</u>       | 제3조(위치) <u>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동 952-4번지 일원에 둔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7조(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| 제7조(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기술교육에 한한다.</u> |
|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<u>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